

## 업무 협약서

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경상남도 동부권 돌봄노동자 지원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복지관"과 "지원센터"의 업무협약에 필요한 제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존중 및 신뢰) "복지관"과 "지원센터"는 상호 존중과 신의로써 본 협약의 이행은 물론이고 본 협약에 수반한 협력사항 발생 시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 기간) 본 협약서의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3. 12. 31까지로 한다. 단, 협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양 기관 어느 일방으로부터 해지에 대한 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제4조(업무협약 범위)

1. 복지관은 동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의 사업과 역할 등을 적극 홍보한다
2. 복지관은 돌봄노동자의 권익 및 건강한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3. 지원센터는 복지관과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4. 지원센터는 기타 상호 기관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한다.

제5조(비밀유지) "복지관"과 "지원센터"는 협력 기관으로서 사업추진을 위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권리) 양 기관은 상대방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의 허락 없이 지적재산권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협약의 해지) "복지관"과 "지원센터" 양 당사자는 향후 업무협약의 내용이 상호 간에 계속 유지목적이 없다고 판단하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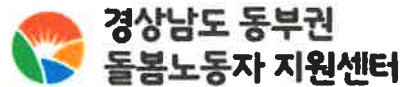
제8조(협약서 보관) 본 협약서는 협약서 당사자인 "복지관"과 "지원센터"가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한다.

제9조(협약 효력)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22년 3월 18일



관장 황성철 



센터장 석윤미

